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 3년형 사업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1. 지원내용 2년 또는 3년동안 우수 중소기업에 근무 → 실질적인 경력형성 및 핵심인재로 육성



청년

- ▶ 2년형 : 2년간 월 12만 5천원씩 300만원 적립 → 만기공제금 마련 (1,600만원 + 이자)
- ▶ 3년형 : 3년간 월 16만 5천원씩 600만원 적립 → 만기공제금 마련 (3,000만원 + 이자)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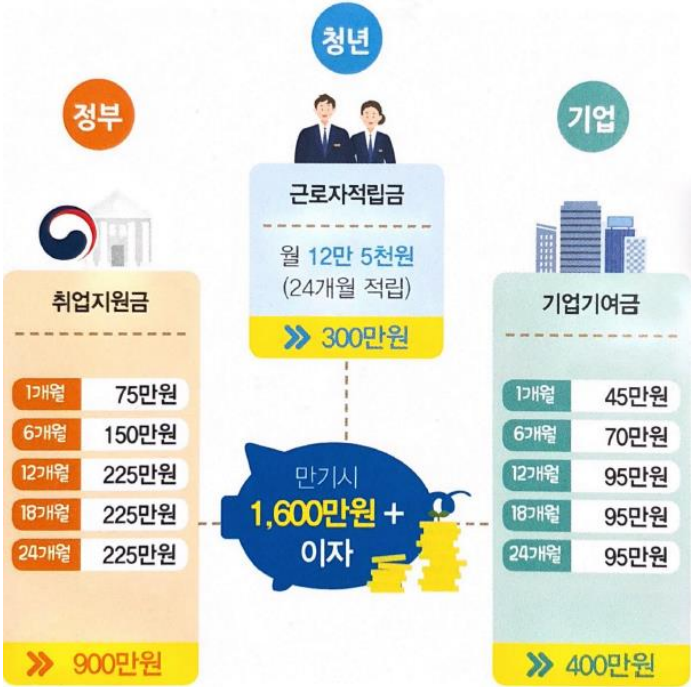
- ▶ 2년형 : 2년간 총 500만원의 지원금 → 400만원을 청년에게 적립, 나머지 100만원을 지원받음
- ▶ 3년형 : 3년간 총 750만원의 지원금 → 600만원을 청년에게 적립, 나머지 150만원을 지원받음

2. 적립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은 회차별로 기업이 운영기관에 신청하셔야 하며, 각각 청년명의 가상계좌와 기업명의 가상계좌로 적립됩니다.

중도해지시 청년의 자기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되며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 환수되며 근무기간에 따라 기업 실계좌로 지급된 기업 순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2년형



기업에서 적립하는 기업기여금 400만원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500만원에서 적립되며, 기업의 별도 부담금 없음

3년형



기업에서 적립하는 기업기여금 600만원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750만원에서 적립되며, 기업의 별도 부담금 없음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 기업의 기본 가입자격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12개월 초과할 경우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2년형 참여가능**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는 **3년형 참여불가**

※ 가입불가

-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중인 자
-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자
- ▶ 신규 입사자이나 청약 신청기한(3개월)이 도과된 자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 고용보험가입자
 - ** 사업주, 일용근로자, 가입예정자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미만의 기업이라도** ①벤처기업 ②지식서비스산업 ③문화콘텐츠산업 등은 **참여가능**하므로 첨부파일 확인요망

※ 참여제한 기업

- ▶ 소비·향락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 종교·학교·의료·사회복지·재단법인)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아래의 기간은 제외

-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 아래의 해당하는 자는 가입 가능

-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및 수료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출석일수 이수)
- ▶ 방송통신·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그 외 참여자격 여부는 동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며 정확한 자격확인을 위해서는 온라인등록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등록: www.work.go.kr/youngtomorrow

문의: 용인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 031-332-9812)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 기업의 가입절차

① 워크넷 참여신청

- www.work.go.kr/youngtomorrow
- 청년, 기업 모두 신청 (기업, 청년→워크넷)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용인상공회의소)

② 지원협약 체결

- 기업은 지원협약 체결을 위한 서류 제출 (기업↔운영기관)
- 협약서류 - 협약서 원본 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미 채용된 인원이 있다면 아래 선발서류와 함께 제출

③ 정규직 채용 및 선발통보

-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 통보 (기업→운영기관)
- 선발서류 - 정규직선발자명단통보서, 근로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 서류제출 완료 후 운영기관이 워크넷에 선발등록

④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www.sbcplan.or.kr
- 선발완료 후 익일 청약가입 가능
- 청년, 기업 모두 신청 (기업 먼저 신청, 청년→중진공)
- 중진공의 자격심사 후 사업 진행

< 기 업 >

두 번째 채용 이후: ①~② 생략, ③선발과정부터 진행 (신규인원 채용 시마다 제출)

< 청 년 >

청년은 ①신청 후 절차에 따라 ④청약가입

※ 유의사항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은 선발 완료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 ①~④ 모든 절차 완료 전 신청기한 만료시에는 청년공제사업 참여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 문의: 용인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 031-332-9812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협약 및 선발통보 안내

지원협약 체결

- 기업은 지원협약 체결을 위한 서류 제출 (기업↔운영기관)
- 협약서류 - 협약서 원본 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미 채용된 인원이 있다면 아래 선발서류와 함께 제출

운영기관(용인상공회의소)은 실시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에 대해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기업과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 지원협약은 당해 연도 최초 청년공제사업 참여 시 **1회** 체결
- (첨부1) 협약서는 **2부 작성**, 직인을 날인하고 반드시 **간인 및 접인**하여 원본제출 (방문or등기)
- 추가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규직 채용 및 선발통보

-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 통보 (기업→운영기관)
- 선발서류 - 정규직선발자명단통보서, 근로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 서류제출 완료 후 운영기관이 워크넷에 선발등록

실시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를 준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급여수준)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

실시기업은 참여신청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후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선발)하게 됩니다.

※ 유의사항

- 선발서류는 지원협약 후 청년채용 시 매회 제출하는 서류로 컬러스캔하여 메일제출 가능
- (첨부2) 정규직선발명단통보서 (수습기간 포함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 근로계약서 사본 (이미 작성된 사내용 근로계약서 가능)
- 추가제출서류: 신분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 협약서류와 선발서류를 함께 제출하실 경우 ★

- 협약서 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규직선발명단통보서, 근로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각 1부
- 협약서는 반드시 원본제출(간인 및 접인), 협약서 외 모든 서류는 컬러스캔하여 메일제출 가능

- 문의: 용인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 031-332-9812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진공 청약신청 안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www.sbcplan.or.kr
- 선발완료 후 익일 청약가입 가능
- 청년, 기업 모두 신청 (기업 먼저 신청, 청년→중진공)
- 중진공의 자격심사 후 본 사업 진행

▶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plan.or.kr

[청약신청 순서]

1. 신규 청약 기업 및 핵심인력(청년) 회원가입 - 기업/청년 공인인증서 필요
2. 가장 우측에 **청년내일채움공제(초록색)** 신청하기 클릭
3. 기업/청년 각각 등록해야 하며 ① 기업이 먼저 등록 후 ② 청년 등록 가능
4. 기업 로그인 - 가입대상 청약정보 찾기 - 사업자번호/이름/생년월일 기입 후 검색 - 청약가등록번호 조회
5. 청년(핵심인력) 로그인 - 청약가등록번호로 로그인 연동 - 청약 완료

- 가입신청 후에는 [접수대기] 상태이며, 중진공의 심사를 거쳐 [접수완료], [청약승인] 상태로 전환됩니다.
- 심사는 중진공에서 이루어지므로 관련 문의는 중진공(☎135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승인일 기준으로 각 사업별 2년간/3년간 청약이 진행됩니다.
- 자세한 등록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의 매뉴얼은 통합매뉴얼입니다. 일반 내일채움공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참여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예) 9월 15일 입사자는 **12월 14일까지**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은 선발서류 정상제출 **다음날부터**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일 기준 1~2일 소요)
- 기한 내 요청서류 미제출, 청약 미신청 시 사업승인 및 지원이 **절대 불가함**을 유념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에 청약접수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기간은 입사일 기준이 아닌 **청약승인일**부터 적용됩니다.
- 청약승인 후 본 사업진행 시 청년의 본인납입금 및 가상계좌번호와 지원금 적립 현황은 **중진공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 안내

지원금 신청

근로자(청년)는 청약승낙일로부터 2년 또는 3년동안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채용유지지원금과 취업지원금을 기업명의 가상계좌와 청년명의 가상계좌에 각각 지급(적립)합니다.

기업은 용인상공회의소를 통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게 되며, 본 사업 진행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 지원금은 **청약승낙일 이후 1, 6, 12, 18, 24개월 / 30, 36개월 (2년형 5회 / 3년형 7회)마다 회차별로 신청**
 - ▶ 기업은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추가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
 - ▶ 추가서류 :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제출), 근로계약서, 해당기간의 급여대장, 임금이체내역서(송금확인증 등)
- ❖ 지원금 신청 후 지급 관련은 중소기업진흥공단(☎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18. 07. 01 입사 / 청약승인일 07. 25

1회차 근속기간(신청대상기간) : 2018. 07. 25 ~ 2018. 08. 24 ☞ 7월, 8월의 급여대장 및 입금내역

2회차 근속기간 : 2018. 08. 25 ~ 2019. 01. 24 ☞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의 급여대장 및 입금내역

※ 유의사항

- ✓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 우측 기업 확인란에 직인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 ✓ 급여대장에 원본대조필 및 직인 날인 하셔야 합니다.
- ✓ 지원금 신청은 몰아서 하실 수 없고 적기에 1회차씩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청약기간은 입사일 기준이 아닌 청약승인일부터 적용됩니다.
- ✓ 근속기간 및 지원금 신청금액 등 모르는 부분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또는 컬러스캔하여 메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팩스 불가)
- ✓ 가상계좌번호와 청년 본인납입금 및 지원금 현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회차 신청시 총 제출서류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
기업명의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임금이체내역서 각 1부

※ 문의 : 용인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 031-336-2528)